

#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20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5월 25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설공단에서 대행·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중 여의도공원 노상공영주차장을 제3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
- 나. 「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사무명 : 여의도공원 노상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(민간업체)
- 나. 위탁 추진개요
  - 위탁기간 : '22. 7. 1. ~ '23. 12. 31.
  - 대상시설 : 여의도공원 노상공영주차장
    - 주소지 : 영등포구 여의도동 2-11
    - 시설규모 : 대지 800 $m^2$ , 주차구획 64면



#### 다. 위탁 필요성

- 서울시설공단에서 대행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중 전문적인 시설관리 필요성이 낮은 주차장에 대해서 제3자(민간업체)에게 위탁함으로써,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익개선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성 제고
- 소규모 노상주차장 위주인 대상시설을 공단 직영 대신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공단 조직 비대화 방지

라. 추진방법 :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적격업체 선정

※ 여의도공원 노상주차장은 신월여의지하차도 공사로 인해 2016년 폐쇄 후 2021년 11월 복구됨에 따라 2020년 일괄 위탁 동의 시 제외되었음.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

제19조(대행사업)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·경비·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 ~ ⑦ 생략

-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10조

제10조(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) ① 법 제8조 제2항 및 제13조 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(이하 "관리수탁자"라 한다)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
2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

3.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
  4. 전통시장인근 10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
  5. 민자사업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·기부채납한자(단, 인근에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)
- ② ~ ③ 생략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※ 작성자 :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과 주차계획과 강영호(☎ 2133 - 2375)